

1. 개정이유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등 지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등록신청연도까지 지속해서 영농종사를 해야 하지만, 현행 규정은 등록신청연도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농업인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26년부터는 전면 비대면 신청·접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포함토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직전연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조문 정비(안 제2조제3호 개정)
- 나. 직불금 신청 시 인터넷·AR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등록신청서 제출 방법까지 확대 인정토록 개선(안 제11조제1항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농업인 등”을 “직전 1년 이상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출”을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 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 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 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 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연도(이하 이 장에서 “지 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라 한 다)의 <u>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u> <u>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u> <u>금 지급대상 농지등</u> (이하 이 장 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 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다 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3. ----- ----- ----- ----- ----- -----1년 이상----- ----- -----하고 있는 자----- ----- -----.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 외
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
소를 둔 경우에는 「농업·농
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
는 자만 해당한다.

가~나. (생략)

4~5. (생략)

제11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2
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
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
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급
대상 농지등 소재지가 같은 시
·군·구 내에서 2개 이상의 읍
·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
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
게 해야 한다. (중략)

-----.

가. ~ 나.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제11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의 등록신청) ① -----

-----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되-----

-----.